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6호

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

‘201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’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동대문구 제기동 136일대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1조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2일
서울특별시 장

1.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: 1개 구역

가.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

1) 정비예정구역 해제 현황

구역 번호	구분	동명	지번	면적 (ha)	용적률	건폐율	층수	추진 단계	정비 유형	예정구역지정일 (고시번호)
10	기정	제기동	136	5.5	190%	50%	12층이하	2	전면 개발	2004.06.25. (서고시 2004-204호)
	변경	해 제								

2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)

-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열람장소

-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(☎02-2133-7188) 및 동대문구 주택과(☎02-2127-4666)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